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강화 규정 마련 등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14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	3
2. 디지털 이용권 지급 근거 신설 및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 사업자의 비용 부담	9
【참고자료 1】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17
【참고자료 2】 2024년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개요	1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0. 29.

다. 회부연월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 등 기간통신역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통해 보편·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들의 이용이 폭증하고 핵심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플랫폼,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가 미비해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직접 제공함에 따라 제도의 홍보에 소홀하며, 이에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

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운영·관리함으로써 이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통신역무 이용 요금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감면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수준을 확대하며,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담케 하여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접근권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의무제공 의무

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 ----- -----.
제4조(보편적 의무의 제공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보편적 의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 ----- -----.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	<삭 제>

현행	개정안
<u>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u> 2. <u>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u> ③ ~ ⑧ (생략)	<삭제> ③ ~ ⑧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4조제1항1)에서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동 조 제2항에서는 그 특성상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 제3항에서는 300억원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2).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의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의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할 의무가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보편적 의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³⁾를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 핵심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플랫폼,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그 중요성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의무 제공이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음.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의 비교>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1]의 ‘재정적 능력’ 등록요건에 따라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가),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다),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라), 교환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마), 국내통신사업(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으로 분류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 가공,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자료: 중앙전파관리소

제5조(보편적 의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0. “보편적 의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이에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최근 정보통신 기술발전, 플랫폼 중심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플랫폼과 포털, OTT 등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간통신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도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과 비교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과기정통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범위나 한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보편 서비스에 해당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무 부처의 의견

과, 부가통신사업이 보편적 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제공 의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이를 법제화하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 음원, 도서 등의 문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다수의 콘텐츠 제작·유통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보편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② 보편적 의무는 전화, 인터넷 망 등 필수재적인 성격을 가진 통신수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데, 부가통신역무는 이러한 필수재적 성격과 차이가 크며, ③ 부가통신역무의 종류는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며, 그 과정에서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도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매년 달라지는 지표에 근거하여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범자를 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역무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고,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며, 본건 개정안에 따라 규율을 받는 대상들이 주로 미국 부가통신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차별로서 한-미 FTA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⁴⁾.

4) 한미 FTA 제 11.3 조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12.2 조는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 위주로 보편적 의무 제공 내지 디지털이용권 소요비용 분담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면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임.

2. 디지털 이용권 지급 근거 신설 및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

사업자들이 요금감면을 제공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 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관리하고,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담하게 함(안 제2조,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8. <u>“디지털이용권”이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되거나 전자 또는 자기(磁氣)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증표를 말한다.</u>
<u><신설></u>	제4조의3(디지털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이용권

현행	개정안
	<u>을 지급한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그 밖에 취약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이용권의 발급 등 디지털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사업규모,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디지털이용권 소요비용의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⑤ 그 밖에 디지털이용권의 지급 ·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사항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⁶⁾는

-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할 의무가 있다.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각 목 생략)
 -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각 목 생략)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에(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제외하고 같다)
 -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
- ③ ~ ④ (생략)
-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편적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체적인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감면 비율⁷⁾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방식을 정부가 디지털 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접근권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의무의 공정성을 실현하여 확장된 복지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감면에 대해 전적으로 손실을 분담하고 있는바, 최근의 디지털 환경하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2024년 현재 디지털 취약계층 중 바우처 사용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

7) 「보편적의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9호) 제5조

우체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므로(참고자료 2 참조), 이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동 개정안에 따른 제도 설계시 연계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디지털 이용권 지급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이 주무 및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이용권 지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바우처 방식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일한 온라인 문화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문화누리카드)⁸⁾의 성격을 볼 때 이미 유사한 바우처 사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재원조달 방식이 정부재원임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디지털 이용권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다음과 같이 디지털 이용권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이용권 소요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밀접한 관련성이 크지 않고, 부가통신역무를 특정하지 않은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개정안 수

8) 2024년 기준 통합문화 이용권은 국비 2,937억원, 지방비 1,006억원 등 예산 3,943억원이 편성됨.

범자에 주로 미국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통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별표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이용권 소요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통신역무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부가통신역무가 보편적 역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금 징수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앞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의무 부담과 마찬가지로 개정안 수범자에 주로 미국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한-미 FTA 위반 문제 제기 가능성⁹⁾과 통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무역법 제301조¹⁰⁾에 해당하여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입장임.

9) 한미 FTA 제 11.3 조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12.2 조는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 위주로 보편적 역무 제공 내지 디지털이용권 소요비용 분담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면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임.

-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사업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발생하는 트래픽 양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한 부가통신역무에 보편적 역무로서의 속성이 생겨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디지털이용권 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포함시켜야 하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

○ 아울러 부담금 신설을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¹¹⁾는 부담금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 외에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와 디지털이용권 지급 근거 신설 및 그 소용비용 일부에 대한 기간·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 규정을 통해 취약

10)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르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지우거나 이를 제한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행위, 정책, 관행(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a foreign country that ar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burden or restrict US commerce, 이하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차별적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retaliatory action)를 취할 수 있음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접근권을 제고하려는 취지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참고자료 1】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 통신요금 감면 제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시행('00년~)

< 통신요금 감면 기준 >

구 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최대 30,000원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본료 월 26,000원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최대 33,500원	기본료 월 11,000원 감면 및 초과 요금 35% 감면 ※ 최대 21,500원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 최대 11,000원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	-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

□ 통신요금 감면 금액

- '23년 12월 기준 감면자수는 약 789만명, 감면금액은 약 1.26조원

구 분('23.12월)	감면자수	감면 금액
장애인	199만명	3,138억
국가유공자	20만명	307억
기초생활수급자	168만명	4,251억
차상위계층	23만명	595억
기초연금수급자	379만명	4,335억
계	789만명	12,626억

□ 통신요금 감면 절차

- 통신요금감면 대상자가 ①통신사대리점, ②정부24, ③복지로, ④주민센터 중 하나의 기관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대상자의 자격 조회 후 감면 적용

※ 통신사는 「전자정부법 제2조」 상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계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대상자격을 조회

【참고자료 2】 2024년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 검토
- (주요 내용) 바우처 금액 내에서 소비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바우처 지급
 - (대상) 디지털 취약계층 중 바우처 사용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를 대상으로 **5,000명** 모집
 - (기간) '24.9월~11월, 3개월 간 시범운영
 - (규모) 총 **44억원** 규모로 **1인당 85,800원**을 지급하며, 통신사 재원을 활용
※ (1인당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 26,000원 × 3개월 × 10% 가산 (부가가치세)
 - (운영 방식)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을 전환하여 통신요금 감면 외 **OTT, 웹툰, 음원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

<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안) > ※ 일부 변동 가능

구분	내용
통신사 서비스	▶ 통신사 통신요금 ▶ 단말기 할부금 등 ▶ 통신사 부가서비스 (컬러링, 데이터쉐어링, 자녀 위치알림, 듀얼번호 등) ▶ 통신사 제휴 상품 (OTT, 도서,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 T우주, 유독 등 포함
디지털 서비스	▶ (OTT) 티빙, 웨이브, 왓챠, 네이버시리즈on ▶ (도서·웹툰) 밀리의 서재, 윌라, 리디, 네이버네이버 웹툰, 카카오카카오 페이지, 카카오카카오 웹툰 ▶ (음원) 지니 뮤직, 벅스 뮤직, FLO(플로), 카카오멜론 뮤직

□ 추진 일정

- (~'24.8월) 디지털 바우처 참여자(5,000명) 모집
- ('24.9~11월) 시범사업 운영(3개월 간) ※ 단 바우처 사용은 '24.12월말까지 가능